

의안번호	제107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12월 일 (제336회)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14년 12월 17일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	107
----------	-----

제안연월일 : 2014년 12월 17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 이유

- 지난 12월 3일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6개 농장에서 발생하였고 살처분된 돼지는 약 12,000 마리가 넘음
- 구제역은 가축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인데, 지금까지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하고, 만약 감염되면 이를 매몰처리 해야만 함
- 우리도는 최근 축산농가에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매번 발생하고 있는데 가축을 살처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방역비용·매몰비용의 국비 부담률 상향조정,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 소요비용에 대한 책임 마련, 예방접종형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삼진 아웃제 도입,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군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 붙임 : 건의안

□ 보낼곳 :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과 위원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실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지난 12월 3일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진천군 6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약 12,000여두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입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농장에서 한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 모두에게 급속하게 감염되는 특징이 있고, 일단 감염되면 고열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수포가 터져 궤양으로 진전되어 앓다가 죽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구제역 예방은 축산농가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가축이 구제역에 감염되면 지금까지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이를 매몰처리 해야만 합니다.

우리 충북도는 최근 축산농가에 구제역과 AI 등 가축 전염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용 그리고 매몰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범 국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방역비용·매몰비용의 국비 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열화 농장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 소요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성실한 축산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예방접종형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삼진 아웃제를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군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